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의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92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7월 15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7월 16일

3. 제안이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라.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6.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및 제정취지

- 동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5일 제출되어, 의안 번호 제92호로 2019년 7월 16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임.
- 제정취지는 근로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나. 주요 검토의견

(1)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0%(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4.5%)의 3배에 해당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무엇보다 2009년 이후 노인 빈곤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접어든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4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표 1〉 한국 노인 빈곤율

(단위 :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인빈곤율	47.0	47.2	48.6	48.5	49.6	48.8	44.3	45.0	43.6

(출처: OECD)

- OECD 자료에서도 한국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31.51%(2017년 기준)로 OECD 평균 14.78% 보다 약 2.1배 높은 수준으로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2018년 기준 32.2%, 1위 아이슬란드 38.1%)로 나타났음.

〈표 2〉 한국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활동 참가율	30.34	29.67	29.72	30.69	31.21	31.78	31.12	31.27	31.51

(출처: OECD)

(2) 노인 일자리정책의 필요성

- 노인 빈곤율 개선을 위해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으며 뚜렷한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인의 취업욕구와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2017년 마포구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 조사²⁾에 대한 응답결과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에 이어 ‘노인 일자리 제공’을 2순위(8개 항목 중 18.2%)로 파악되는 등 상대적으로 노인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높았음.
- 마포구 60세 이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사³⁾에서도 ‘취미, 여가, 건강관련 교육’에 이어 2순위(9개 항목 중 10.6%)로 ‘직업능력교육’으로 조사되는 등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출처: 2017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대상자: 60세 이상, P234)

3) 출처: 2017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P147)

-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4년 11.96%에서 2019.6월 기준으로 13.69%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 노인 인구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⁵⁾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표 3〉 마포구 연도별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인 구 수	395,830	398,351	390,887	385,783	375,077	374,422
65세 이상 수	47,360	48,598	48,303	49,615	50,544	51,279
65세 이상 비율	11.96	12.19	12.35	12.86	13.47	13.6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마포구 행정포털)

〈표 4〉 한국 노인 인구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5세 이상 비율 (%)	12.4	12.8	13.2	13.8	14.3	14.9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천구, 광진구 등 1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는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장에게 정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노력의 책무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시행,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과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4) 유엔 등 국제기구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5) 출처: 포털 '다음' ㈜천재교육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87087>)

- 안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과 제6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의 생산품 우선 구매 그리고 제8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제9조의 보험가입 및 제10조의 재정지원 등의 주요 조문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6)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에 근거한 바,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인일자리 발굴과 지원으로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6)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1 - 비용추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4조(구청장의 책무)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8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19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예산 확정내시 알림

*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과-14640(2018.12.12) (국비30%, 시비35%, 구비35%)

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
다. 비용추계기간 : 2019. 1.~ 지속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국·시비 보조금	5,663,232	5,663,232	5,663,232	5,663,232	5,663,232	28,316,160
	구비 보조금	3,049,433	3,049,433	3,049,433	3,049,433	3,049,433	15,247,165
	소계(a)	8,712,665	8,712,665	8,712,665	8,712,665	8,712,665	43,563,325
세출	국비 보조금	2,613,799	2,613,799	2,613,799	2,613,799	2,613,799	13,068,995
	시비 보조금	3,049,433	3,049,433	3,049,433	3,049,433	3,049,433	15,247,165
	구비 보조금	3,049,433	3,049,433	3,049,433	3,049,433	3,049,433	15,247,165
	소계(b)	8,712,665	8,712,665	8,712,665	8,712,665	8,712,665	43,563,325
□ 총 비용(a-b)		0	0	0	0	0	0

※ e호조 사업예산구조화 참조

4. 재원조달 방안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예산교부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이은경 (☎8857)

참고자료2 -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43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1. 28.> [본조신설 2007. 1. 3.]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삭제 <2011. 8. 4.>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1. 4. 7.>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7.>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7.>

④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6. 4.> [본조신설 2005. 7. 13.]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관련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2005. 12. 27.]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본조신설 2005. 12. 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5] [보건복지부령 제650호, 2019. 7. 5, 일부개정]

제2조(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4. 25.> [본조신설 2013. 12. 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4. 2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종류

- 1)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 2)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가목1) 및 2)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 일 것

2. 인력 기준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